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법령의 모호한 문언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동시에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및 조치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구체화(안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협의 및 조치명령 대상을 명확히 함

다.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32조제2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

에게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 단, 해당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로 한한다.

나. 가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3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1. -----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 단, 해당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로 한한다.
<신 설>	나. 가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3.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u>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조치</u>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u><신 설></u> <u><신 설></u> ③ 4.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 사항에</u> <u>관한</u> ----- ----- -----.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u>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 조치</u>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u>발굴 조사 보고서 평가</u> ③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4941

